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10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13.
3.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
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u> <u>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u>

현행	개정안
	<u>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u> 2.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9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②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운용한다. ③ 제3항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 구성, 소집, 심의대상, 심의신청 절차, 심의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가. 개정안에 따른 대상 범죄 개관

- 개정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려는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는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면허 대여 범죄에 대한 수사권, 비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한 수사권 등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료법」 등 위반 범죄 관련 조문>

「의료법」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위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

-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은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2024년 9월을 기준으로 3조 5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주요 유형>

실소유자	불 법 내 용
의료기관 개설자격 미보유자 (비의료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기관 개설자격 보유자 (의료인)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
개설자격 미보유자 (비약사)	비약사가 약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운영
개설자격 보유자 (약사)	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약국을 개설·운영
	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러나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86%(2,399억 원)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음.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환수결정		징수	
	기관수	금액(A)	금액(B)	징수율(B/A)
계	1,737	3,052,594	239,916	7.86
2009	6	558	123	22.04
2010	44	7,817	1,406	17.99
2011	158	57,667	7,175	12.44
2012	169	67,251	7,835	11.65
2013	153	128,997	10,722	8.31
2014	176	217,778	17,945	8.24
2015	165	302,929	16,832	5.56
2016	203	382,124	24,565	6.43
2017	208	447,894	19,890	4.44
2018	112	178,167	23,667	13.28
2019	104	339,314	19,871	5.86
2020	73	320,030	23,113	7.22
2021	32	35,256	16,517	46.85
2022	31	131,884	14,990	11.37
2023	58	187,433	17,765	9.48
2024	45	247,495	17,500	7.07

2024. 9. 30.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환수결정		징수	
	기관수	금액(A)	금액(B)	징수율(B/A)
계	1,737	3,052,594	239,916	7.86
종합병원	1	52,467	1,687	3.22
병원	87	237,169	17,338	7.31
요양병원	284	1,369,684	80,443	5.87
의원	667	462,408	56,321	12.18
치과병원	3	598	374	62.54
치과의원	168	46,584	12,179	26.14
한방병원	64	94,136	9,229	9.80
한방의원	233	52,233	11,321	21.67
약국	230	737,315	51,024	6.92

2019. 1. 1 ~ 2024. 9. 30.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적절성

○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바,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 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¹⁾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²⁾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³⁾이며 「의료법」

1) 수사의뢰 후 수사결과 확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19년~2024년 평균 11개월로 나타남.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사대상기관수(개소)	858	53	123	74	167	236	215
평균소요기간(일)	336	160	305	313	394	358	336

※ '24년 9월말 현재 수사종료연도 기준

2)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3)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불법 개설 의료기관 분야)>

- 제도 도입 '17.12월, 복지부 공무원 3명 지명(대전지검)

- (행정조사) '19~'24.6월 행정조사 869건 실시, 556건 수사의뢰

* 「의료법」 개정으로 2021. 6. 30.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복지부 특사경은 그간 행정조사 위주로 업무 수행

- (수사지원) 서울·경기·경남 특사경 수사 지원('19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만을 가져 「약사법」 위반의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사경험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짐.

-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약 118명(본부 72명, 지역본부 46명)의 전문 조사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팀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으로 수사를 지원하고 있음.
-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설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병원·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중요한데,⁴⁾ 이에 진료비 지급기관으로서 각종

- (직접수사) '23.7월 특사경 1명 추가 지명 후 직접수사 개시('23.9월 ~, 1건)

자료를 보유·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는 직무범위를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행위 전체가 아닌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중 수사권을 부여할 대상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로 정하고 있어 수사 권한의 남용 여지를 최소화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적절성 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선장·기장 등의 경우 선박 및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⁵⁾, 국

4)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선장과 해원 등)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경우 국립공원 내에서 경범죄⁶⁾,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경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범죄⁷⁾, 민간교도소의 교도소장 및 직원의 경우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⁸⁾로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권이 신속히 미치기 어려운 장소적 한계가 있거나 수사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음.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사례>

부여 대상	대상 범죄
선장, 기장 등	선내 또는 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금융감독원 임직원	금융시장의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민영교도소 장 및 직원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 ①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4급 이상의 직원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무원 외제 등)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 이와 같이 비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비공무원의 수사권 행사의 경우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권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하여 범죄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비공무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만큼 긴급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대한 적절성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대상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비공무원이자 비수사전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수사에 영향을 줄 경우 「형사소송법⁹⁾」상 규정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수사기밀 유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없음.

□ 한편, 안 제7조의4제3항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 구성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령으로의 위임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로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의 근거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항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하고, 사법경찰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게 함으로써 민간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함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에 설치에 대해서는 특사경 수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있는 것과 배치되고, 수사의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9)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점, 현지 조사에 이어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 수사의 비전문가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강제수사할 경우 의료인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대한병원협회**는 현행법상 이미 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하고 있어 복지부는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지자체는 서울·경기 등에서 사무장병원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바,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사무장병원 전담팀을 확대·운영하는 것이 적절하고, 비공무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권 행사는 수사권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70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3.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5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000명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3.12.31.기준)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01
2	기획재정부(국세청 ¹⁰⁾)	조세 관련 범죄	5,273
3	법무부(교소도등)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범죄	1,358
4	국방부(기무사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등 위반 범죄	312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40
6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2,157
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9
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128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38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품방역법 위반 범죄	208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79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보안법위반범죄	14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5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4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00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69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057
20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60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2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57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1
2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65
24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503
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26
26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18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36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12
2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2
30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28
31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관련 범죄	3
32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3
33	국토교통부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4
3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범죄	25
3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5
합 계			14,536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

- 10) 기획재정부(국세청)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조사 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혐의자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범칙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절차도 법무부 예규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특사경 인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400
2	부산광역시	〃	334
3	인천광역시	〃	371
4	대구광역시	〃	203
5	대전광역시	〃	172
6	광주광역시	〃	166
7	울산광역시	〃	235
8	세종특별자치시	〃	45
9	경기도	〃	730
10	경상남도	〃	404
11	경상북도	〃	595
12	충청남도	〃	583
13	충청북도	〃	528
14	전라남도	〃	465
15	전라북도	〃	273
16	강원특별자치도	〃	531
17	제주특별자치도	〃	33
합 계			6,068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